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5일, 김주영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
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주영의원)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므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보유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유족 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주장·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노동

자나 그 대리인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가 같이 수급 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생 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기타 사항

없 음